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21

발의연월일: 2021. 5. 14.

발 의 자:김예지・김기현・김상훈

김승수 · 류호정 · 서병수

오영환 · 이만희 · 이종배

정진석 · 최연숙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,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객시설 및 도로에는 점자블록을설치하여야함.

그런데 점자블록이 이동편의시설의 일종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점자블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편이고, 점자블록이 훼손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점자블록의 부실한 설치·관리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.

이에 이동편의시설의 예시로 '점자유도블록'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

하고,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, 점자블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7호 등).

법률 제 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 중 "임산부가"를 "점자유도블록 등 안내시설, 임산부가"로 한다.

제1754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누구든지 이동편의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9조 중 "제11조를"을 "제11조제1항을"로 한다.

제31조 중 "제11조를"을 "제11조제1항을"로 한다.

제1754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한 자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6. (현행과 같음) 1. ~ 6. (생략) 7. "이동편의시설"이란 휠체어 7. -----탑승설비, 장애인용 승강기, 장애인을 위한 보도(步道),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---점자유도블록 등 안내시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 설. 임산부가-----가 교통수단,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. 8. (생략) 8. (현행과 같음) 제1754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1754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|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(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) 제11조(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) (생략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) <신 설> ② 누구든지 이동편의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동 편의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아니

	<u>된다.</u>
제29조(시정명령) 교통행정기관은	제29조(시정명령)
제11조를 위반하여 대상시설에	제11조제1항을
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	
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	
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	
지 아니하게 유지・관리한 교	
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	
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	
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	
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	
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	
명할 수 있다.	
제31조(벌칙) <u>제11조를</u> 위반한 자	제31조(벌칙) <u>제11조제1항을</u>
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	
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	
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	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
제1754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	제1754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
증진법 일부개정법률	증진법 일부개정법률
제3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33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
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
부과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
<u> <신 설></u>	1의2.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
	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
	용을 방해하거나 이동편의시
	설을 훼손한 자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